

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

(재)함께일하는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0년 9월 18일
(재)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

1. 모집개요

○ **[사업명]**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

○ **[모집대상]**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

-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
-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정부부처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
-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
< 지원제외 >

- ◇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채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- ◇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
(단,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잔액을 차감 후 잔여한도 내 지원가능)
- ◇ 사회적경제기업이 휴, 폐업 중인 경우
- ◇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CCC-등급일 경우
- 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○ **[모집기간]** 2020년 9월 23일(수) ~ 2020년 10월 19일(월) 24:00 마감

○ **[자금용도]** 부동산 임차보증금/매입자금, 시설자금, 운영자금, 대환자금

○ **[대출조건]**

구분	대출금액	고정금리	대출기간	상환방법
단기운영자금	최대 3천만원	3%	2년	6개월 거치,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장기운영자금	최대 1억원	3%	4년	12개월 거치,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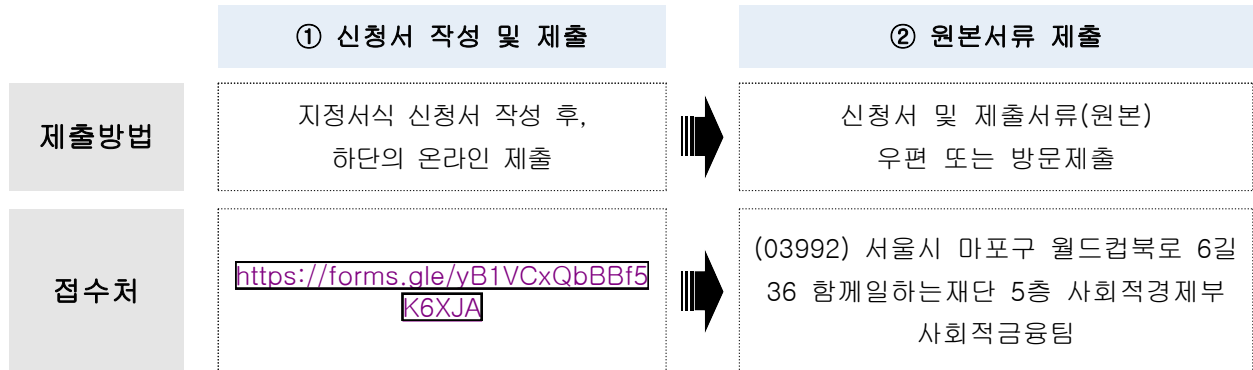
※ 거치기간동안 이자 상환

※ 연체 발생 시 대출이자에 3%를 가산한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

※ 서민금융기관(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국민행복기금)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, 잔여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

2. 신청

○ [신청방법] 지정서식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서류 우편 제출



※ 원본서류는 10.19(월) 24:00 도착 분까지 인정

※ 서류심사 통과업체는 현장실사 전, 기업신용평가사 「이크레디블 신용평가조회 신청 및 자료 작성」 필요

○ [제출서류]

1. 용자 신청서 1부 *재단 지정서식

[붙임1] 부채현황표 1부

[붙임2] 추정 매출/현금흐름표 1부

[붙임3]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·이용·동의서 각 1부

[붙임4] 견적서 및 (예정)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 *시설자금 신청하는 기업만 제출

2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1부

3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

4. 법인인감증명원 1부

5. 사회적기업 인증/지정서 사본 1부

6.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(원본대조필)

7.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(2017~2019년)

8.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(2019년~2020년 내역)

9. 법인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

10.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
11.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(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차입처 발급)

※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

※ 제출한 신청서는 실제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, 대출승인 취소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※ 대출실행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관련 채권확보(근저당권설정, 양도담보계약, 채권양도계약 등)를 위한 조치시행 예정

○ [문의처] (재)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(02-330-0704, 0736)

3. 심사

○ [심사일정] 2020년 10월 20일 ~ 11월 6일

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○ [심사기준] 기업 역량, 사회적 가치, 재무건전성, 발전가능성, 상환능력 등 종합평가

구분	심사기준
서류심사	• 기업역량, 기업신용, 사회적 가치, 재무건전성 등
현장실사·기업신용평가	• 제출서류 사실 및 현장 확인, 기업 종합평가 등
최종심사	• 경영능력, 자금필요성, 사회적성과, 상환가능성 등